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10.6(목) 10:00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1. 제안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2010.11.24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등 용어 정의(안제2조)
- 군,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
 - 지정 전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협의회 협의
 -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사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안 제12조)
- 전통산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협의회 협의 거처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

5. 검토의견

-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 안 제6조에서는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 안 제8조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12조에서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14조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0월 2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제정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간의 상생공존의 여건 조성으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된 사항으로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의 규정에는 적합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 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